필리핀 대법원

국가개요

1. 국명 :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2. 수도 : 마닐라(Manila)

3. 인구·면적 : 1억 1,020만명(2021), 30만km(한반도의 약 1.3배)

4. 공용어 : 영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5. 1인당 GDP: 3,576달러(2021년)6. 독립일: 1946. 7. 4.(미국으로부터)7. 정부형태 및 의회: 대통령 중심제

1. 명칭 : 대법원

O Supreme Court of the Philippines

2. 연혁

- O 1899. 1. 21. 말로로스 헌법 공포
- O 1901. 7. 11. 대법원 설립
- O 1935. 5. 14. 1935 헌법 개정
- O 1943. 11. 7. 1943 헌법 개정
- O 1973. 1. 17. 1973 헌법 공포 대법원의 구성과 역할에 영향
- O 1986. 3. 25. 자유헌법 (Freedom Constitution) 공포
- O 1987. 2. 11. 1987 헌법 발효 사법권의 개념에 대한 정의 포함

3. 구성

- 대법원장 1인과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됨(헌법 제8장 제4조 제1항).
- O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사법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함(헌법 제8장

제8조). 임명에 승인은 필요로 하지 않음(헌법 제8장 제9조).

- O 대법관의 자격: ① 출생부터 필리핀 국민인 자, ② 40세 이상인 자, ③ 15년 이상 하위 법원의 판사 또는 변호사로서 경력을 가진 자, ④ 능력, 청렴, 정직, 독립성을 갖춘 자(헌법 제8장 제7조).
- O 대법관의 정년은 70세이며, 정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음(헌법 제8장 제11조).

4. 권한

- O 원심관할권(헌법 제8장 제5조 제1항)
 - 대사관, 기타 공적 외교 사절, 그리고 영사에 관한 사건과 이송명령, 금지명령, 직무 집행 영장, 심문 영장, 인신 보호에 관한 탄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수 있음.
- O 상고심관할권(헌법 제8장 제5조 제2항)
 - 법률 또는 법원 규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항소 또는 직무 집행 영장과 하위 법원의 최종 판결 및 명령을 검토, 정정, 취소, 수정 또는 확인할 수 있음.
 - · 조약, 국제 또는 행정협정, 법률, 대통령령, 성명(proclamation), 명령(orders), 지시(instruction), 조례(ordinance) 또는 규정의 합헌성이나 유효성이 문제되는 모든 사건
 - · 모든 세금, 부과금, 세금경정 또는 요금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제재금의 적법성과 관련된 모든 사건
 - ㆍ하위 법원의 관할권 유무가 문제되는 모든 사건
 - · 부과된 처벌이 무기징역(reclusion perpetua) 또는 그 이상인 경우의 모든 형사사건
 - · 법률의 위반 또는 법률적 쟁점만 문제되는 경우의 모든 사건

5. 심리 및 결정

O 전원합의체(대법원장과 대법관 14인)로 또는 3인, 5인 또는 7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함(헌법 제8장 제4조 제1항).

- 전원합의체로 심리해야 하는 조약, 국제 또는 행정협정 또는 법률의 합헌성과 관련된 모든 사건과, 대통령령, 성명서, 명령, 지시, 조례 및 기타 규정의 합헌 성, 적용 또는 운용과 관련된 사건 등 법원 규칙에서 전원합의체로 심리하도 록 규정한 그 밖의 모든 사건은 해당 사건에 대한 평의(deliberation)에 실질적 으로 참여하고 이에 대해 투표한 대법관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됨(헌법 제8장 제4조 제2항).
-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 또는 사안은 해당 사건의 사안에 대한 평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이에 대해 투표한 대법관 과반수의 동의로 판결 또는 의결됨.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결정함. 단, 전원합의체 또는 재판부의 판결에서 법원이 정한 원칙 또는 법리는 전원합의체에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되거나 취소될 수 없음(헌법 제8장 제4조 제3항).

6. 연락처

O 주 riangle: Supreme Court of the Philippines,

Padre Faura St., Ermita, Manila,

Philippines

○ 전화번호 : +63-0928-500-9872, +63-02-85225094, +63-02-85225090

O 이 메일: pio.sc@judiciary.gov.ph

O 홈페이지: https://sc.judiciary.gov.ph/

※ 출처 : 필리핀 대법원 홈페이지

필리핀공화국 헌법

Official Gazette (https://www.officialgazette.gov.ph/)

※ 참고: 필리핀공화국 헌법 번역본(국회도서관)

(2023. 2. 작성)